

집 단 에 너 지 사 업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

1. 개정 이유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이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사용자간 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등을 他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규정

-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산정기준 및 통지방법 등을 부령으로 규정(안 제18조3)
- 분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조문 수정 반영(안 제19조, 제21조, 제23조)

나.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사업규모 하향(1만호→5천호 이상) (안 제3조)

다.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개발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관련 他 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화 (별표2)

라. 업무의 위탁 및 민원신청인의 개인정보 요구 최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 보완 등 (별지 제1호서식 등 18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만호”를 “5천호”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
으로 산정한다.

②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
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
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
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
는 연체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제2항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9조제5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6조의2제1항”으로, “부담금”

을 “분담금”으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부담방법”을 “분담방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부담한”을 “분담한”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 3, 4, 5, 7, 10, 11, 12, 13, 16, 17, 19, 20, 21, 22, 23, 2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 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 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2.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와 협의요청시기등) ①----- ----- ----- ----- ----- 5 천호 ----- -----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등) ①법 제16조의2제1 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 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 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 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p><u>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④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제2항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u></p>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u>분담금</u>	5. 법 제16조의2제1항----- ----- <u>분담금</u>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u>분담 방법</u>	3. ----- ----- ----- <u>분담 방법</u>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u>부담한</u>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제22조(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 ----- ----- <u>분담한</u> -----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제3조제3항관련)

협 의 대 상 개 발 사 업	협 의 요 청 시 기
1. 주택건설사업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신청 전 ○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전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3.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신청 전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전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관련)

기재사항	구비서류(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것에 한한다)
1. 사업구분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개시예정시기 4. 사업개시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용도별 수요 추정 및 공급계획 5.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6. 열공급시설의 개요 가. 열원시설 : 설치장소, 종류 및 용량 나. 열수송시설 (1) 열수송관 : 재료, 최대지름 및 총길이 (2) 순환펌프 : 설치장소, 종류 및 용량 7. 전기설비(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준용한다) 8. 공사일정	1. 열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2. 열공급시설의 배치상황을 나타낸 도면 3. 삭제<2008.12.31> 4. 열공급시설의 공사·운용 및 유지에 있어서의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5. 공사비계산서 6. 사업개시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7. 타인으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공급자와의 수급에 관한 기본합의서 사본 8. 신청인이 특수법인인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등기부등본, 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삭제 <2006.12.13> 11.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전기설비(배전선로를 제외한다)의 개요와 전기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나. 송전관계 일람도 다. 전기공급구역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 그 지역을 공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의 공급에 미칠 영향에 관한 설명서 라.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및 유지에 있어서의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마. 전기의 공급에 관한 사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와 가목 내지 라목의 서류중 변경되는 것 12. 열부하 산정에 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지지구인 경우 건물용도별 열부하 산출 내역 나. 열수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경우 기본합의서 및 적정성 검토자료 (1) 열수급 상세 조건(압력, 온도, 유량, 연도별 수급량 등) (2) 열 사용 공정에 대한 설명자료 등

공사계획(변경)의 승인신청 또는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관련)

열공급시설의 종 류	기 재 사 항	첨부서류(해당승인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한다)
1. 열원시설	가. 설치장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설비제원	가. 설치도 나. 주요장치의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서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2. 열수송관	가. 시점 및 종점 나. 길이(지중·지상 ·가공등별 및 지 름별로 기재할 것) 다. 최고사용온도(온 수, 냉수, 증기별 로 기재할 것) 라. 최고사용압력 마. 주요재료 및 두 께 바. 차단장치의 종류 사. 압력안전장치 종 류	가. 열수송관의 경로(지중·지상·가공등별 로 기재할 것), 경유지의 명칭 및 열수송 관 인근에 있는 주요도로·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위치를 나타낸 1만분의 1이상 의 지형도 나. 강도계산서 다. 용접방법에 관한 설명서(접합부분의 구 조도를 포함한다) 라. 이음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신축흡수조치방법에 관한 설명서(계산근 거 등을 기재할 것) 바. 부식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사. 압력안전장치의 구조도 아. 기계적 충격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 명서 자. 방열조치에 관한 설명서 차. 열수송관을 지지하는 공작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3. 순환펌프	가. 설치장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설비제원	가. 설치도 나. 주요장치의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서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비 고 : 변경승인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 승인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부24(www.gov.kr)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성명	부서	직위	
	실무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급구역	열			
	전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기수급지점

비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의 허
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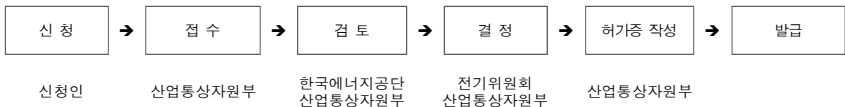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사람)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특수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성상 유의사항

1. 신청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구역은 시·군·읍·면·동·번지를 씁니다.

처리절차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3. 사업허가증	수수료 없음		
작성상 유의사항				
신청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허가증	수수료 없음	
작성상 유의사항			
신고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앞쪽)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 [] 허가증 [] 변경허가증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공급구역	열
	전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기수급지점	
공급용량	열
	전기
시설의	열공급시설
설치기간	전기설비
허가 조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뒤쪽)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담당자 ㉠

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피승계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승계 사유		[] 양수		[] 합병		[] 상속		[] 그 밖의 사유	
승계 연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전부(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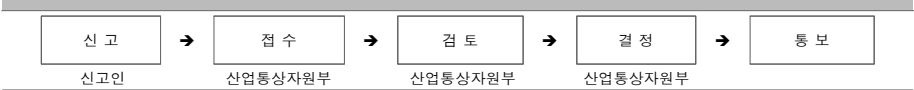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사람)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특수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사업허가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한 5만분의 1 지형도와 양수한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상 유의사항

신고인란, 피승계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집단에너지사업 [] 휴업 [] 폐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휴업기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의 전부(일부)의 []휴업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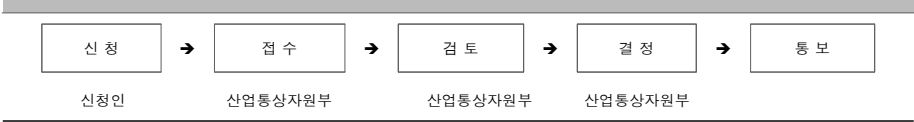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4. 휴업 또는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5. 사업허가증 ※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상 유의사항

신청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법인 해산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해산 예정 연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사업재개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 재개 연월일									
재개사업 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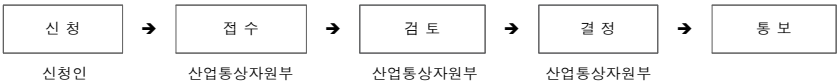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작성상 유의사항

신고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규정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 내용 (변경신고 시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규정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공사계획 [] 승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 내용 (변경승인 신청시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가. 공급규정안 나. 요금이나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 규정 시행일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2. 변경신고 시 가. 공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나. 요금이나 기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 변경시행일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수수료 없음						
작성상 유의사항								
신고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보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첨부서류	1.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공사계획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 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승인을 받으려는 공사계획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각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한국에너지공단 사전기술검토서	수수료 없음								
작성상 유의사항										
신청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승인서 작성	→	발 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 부		산업통상자원부		

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공사 사유	[] 경미한 공사 [] 재해복구공사 [] 그 밖의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공사 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미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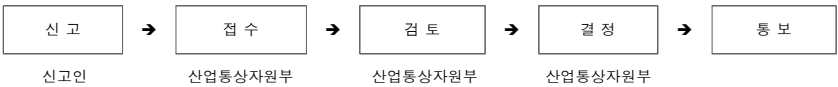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공사내역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상 유의사항

신고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사용전 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신청 범위(구간)	용량	변동사항	시공자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검사 희망 연월일	사업개시 예정 연월일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작성상 유의사항

신청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사용 전 검사
[]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신청 범위(구간)	용량	불합격 내용 및 사유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검사 연월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정기검사)에 불합격되었음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점 검 필 중

사용자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점검대상 열사용시설 소재지				
점검대상 열 사용시설				
점검 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열사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되었기에 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집단에너지사업자 대표자

인

안전관리규정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사항 기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규정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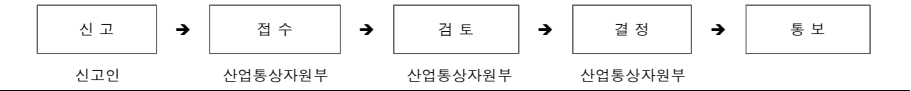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상 유의사항

신고인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928